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8월 2일

청 원 인

성 명 : 온혜인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온혜인
건명	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8월 2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온혜인 외 15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p> <p>제 14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lt;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gt;입니다.</p> <p>최근 초,중,고등학교에 외부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무단출입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문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지킴이 선생님을 배치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통제만이 이어져 현행대로는 교내 외부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더 강력히 교내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p> <p>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초중등교육법 제57조 2</p> <p>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p> <p>③ 학교의 장은 교내 치안 유지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방안으로 신분 확인용 전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p> <p>1. 교내 출입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한다.</p> <p>2. 재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행정 사무처를 통하여 신원 확인용 전자코드를 발급받도록 한다.</p> <p>3. 출입 가능 외부인이라 함은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p> <p>1) 계약직, 방과 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p> <p>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p> <p>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p> <p>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p>	

<p>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p> <p>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p> <p>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p> <p>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p> <p>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4. 출입 가능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여 단기 코드를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한다.</p> <p>5.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 시스템 적용이 불가 할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신원확인 대체 서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p> <p>1) 여권</p> <p>2) 주민등록증</p> <p>3) 운전면허증</p> <p>4) 임시신분증</p> <p>6.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물리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p> <p>7.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으로 제 30조의8(학생의 안전 대책 등)의 3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p> <p>1) 심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기당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p> <p>2) 한 학교 당 파견되는 심사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9조(학생의 안전 대책에 대한 처벌)</p> <p>① 제30조의8(학생의 안전 대책 등)의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 또는 경영자 등의 최고책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청원서

## 1. 제안이유

학교에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는 광주광역시에서만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 2015년 12건이 발생해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비실 설치 및 지킴이 선생님 배치를 하고 있으나 지킴이 선생님이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얼굴을 전부 외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외부인의 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틈을 노려 학교로 침입을 시도하는 범죄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10대 고교 중퇴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남성이 둔기를 들고 난입해 행패를 부리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서 학교는 전자식 신원확인 장치를 통해 정확한 출입 통제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된 신원 확인을 거침으로써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좀 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중등교육법에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의 3호와 제 69조(처벌)을 신설한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내 치안 유지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방안으로 신분 확인용 전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교내 출입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재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행정 사무처를 통하여 신원 확인용 전자코드를 발급받도록 한다.

3. 출입 가능 외부인이라 함은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계약직, 방과 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출입 가능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여 단기 코드를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 시스템 적용이 불가 할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1) 여권
  - 2) 주민등록증
  - 3) 운전면허증
  - 4) 임시신분증
6.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물리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
7.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으로 제 30조의8(학생의 안전 대책 등)의 3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 1) 심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기당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한 학교 당 파견되는 심사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처벌)

① 제30조의8(학생의 안전 대책 등)의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 또는 경영자 등의 최고책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신설
<p>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p> <p>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li> </ol>	<p>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p> <p>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p><b>1.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b></p> <p><b>2.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b></p> <p>③ 학교의 장은 교내 치안 유지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방안으로 신분 확인용 전자</p>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교내 출입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재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행정 사무처를 통하여 신원 확인용 전자코드를 발급받도록 한다.

3. 출입 가능 외부인이라 함은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계약직, 방과 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출입 가능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여 단기 코드를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 시스템 적용이 불가할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확인 할 수 있다.

1) 여권

2) 주민등록증

3) 운전면허증

4) 임시신분증

6.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물리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

7.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으로 제 30조의8(학생의 안전 대책 등)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1) 심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기당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한 학교 당 파견되는 심사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처벌)

① 제30조의8(학생의 안전 대책 등)의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 또는 경영자 등의 최고책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